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추록 I)

1994. 3

통  
일  
위  
원



— < 일러두기 > —

- 이 책자는 우리원이 올해초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4. 1)의 제1차 추록이므로 동 법규집에 합철하여 사용하기 바람.
- 동 법규집에 수록된 북한의 합영법('84. 9. 8 제정)은 이번 에 발행하는 추록(1)의 개정 합영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용에 착오없기 바람.

— < 차 례 > —

1. 합영법 .....	1
2.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	11
3.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23
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	31



# 1. 합 영 법



# 합 영 법\*

## 제 1 장 합병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의 합병기업 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병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병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6 조 합병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병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94. 1.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 조 .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 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 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 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할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2 조 합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몹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 13 조 합병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을 수 있다.

제 14 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 이상 돼야 한다. 등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 16 조 합병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 17 조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병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 18 조 합병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19 조 합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

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 20 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 21 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 조업일로 된다.

제 23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 24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 25 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27 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 이용해야 한다.

제 28 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30 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32 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 33 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 34 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35 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

제 36 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 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 37 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 38 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 39 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연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해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 40 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 41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 42 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병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43 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 44 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병기업의 모든 거래 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 45 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 46 조 합병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합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 2.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

\*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10 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

## 제 2 장 인력의 채용·해고

제 11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3 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

아들여야 한다.

제 1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 15 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 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 16 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긴 이유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 17 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 18 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 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년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19 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 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 2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 제 4 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 23 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

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 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5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 제 5 장 노동보수

제 26 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백 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 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 27 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 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 28 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

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 2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 30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 31 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노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 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 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 33 조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 제 6 장 노 동 보 호

제 34 조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 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 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 기술교육 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 36 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3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노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 38 조 외국 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 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 7 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 39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

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 40 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 41 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장기금은 종업원에게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

제 42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요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요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 43 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 44 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



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 체육사업·후생시설 운영 같은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45 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 46 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을 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 47 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3.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정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정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정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

\* 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신청서에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 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안에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 13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제 15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의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16 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 1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

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에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21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연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2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기업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제 24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인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노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아래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 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 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한다.

제 27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내야한다.

제 28 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

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 29 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입증할 경우에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 30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 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 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일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일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해서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

어진 때로부터 5년동안(재정부기 결산서, 고정재산 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 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10 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 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11 조 귀국(임시 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13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부문의 소득, 상

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이자소득 2)이익배당소득 3)재산의 임대 및 양도 소득 4)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방식을 하여 얻은 소득 6)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이밖의 소득, 외국 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 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연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에 유통비) 3)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16 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 17 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0% 4)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 18 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9 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분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한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 기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분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결

산이윤,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23 조 공제납부장은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24 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해 결산하고 통합·분리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통합·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해야 한다.

제 25 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26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 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 27 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 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 28 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 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이 포함된다.

**제 2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30 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 31 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 32 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 33 조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밝히고 해당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 34 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5 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 36 조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 37 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

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 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율로 한다.
-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 39 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40 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 납부한다.
-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

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41 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42 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 제 4 장 재 산 세

제 43 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4 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임대했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된다.

제 45 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 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46 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 47 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 48 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9 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 50 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제 51 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5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 5 장 상 속 세

제 53 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 54 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 55 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 57 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 58 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 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 제 6 장 거 래 세

제 59 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

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 60 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 61 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62 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 63 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 64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선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 준다.

## 제 7 장 지 방 세

제 6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 66 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 67 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며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 68 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 69 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 70 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도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 71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이용에 대한 세무등록 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 72 조 자동차 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제 73 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 74 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 75 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했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폐기했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 76 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 77 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입증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7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해야 한다.

제 79 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